

##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

1. 용역명 : 「2018/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(KSP)」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
2.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. 06. 28까지
3. 위탁개요
  - 2018/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(KSP)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관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, 민관 컨설팅 기관에 경제·개발협력 관련 국제 컨설팅 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
4. 긴급입찰 사유
  -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
    - 본 사업은 정부간 협력사업으로서 협력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, 우호적 경제협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바, 사업수행기관을 조속히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함으로써, 협력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야 함.
    - 특히,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특성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1~2개 연도 이전에 접수한 사업 수요에 기초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바,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긴급입찰을 진행하고자 함.
5. 근거 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제4항 및 제5항
  - (제4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   1.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   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  - (제5항)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   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